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연번	법조항	주요내용	벌칙
1	제14조[이사사회보고 및 승인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자는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공사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해당사)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 안전보건업무 총괄 관리하도록 선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제16조[관리감독자]	•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작업복·보호구 착용·방호장치 점검 및 교육 등 업무수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조 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하는 업무 •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및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지정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해당사)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해당사)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 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등 작성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정기 : 사무직(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외(매반기 12시간 이상), • 채용 시 :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 2시간 이상, • 특별교육(39개작업) : 1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정기 : 연간 16시간 이상 ※ 상시 과정보설 운용 및 계약기간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교육시간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참고) ※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과정보설 교육시간은 상기의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특별교육 시간과 동일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안전보건교육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기관의 안전·보건 업무 종사자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9	제34조[법령요지등의 게시 등]	•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 후 기록 보존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하고,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는 참여 필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직무미이행 시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1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 유해·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등 안전·보건익식 고취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외국인 사용자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여도 작성)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2	제38조[안전조치]	•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기계기구 기타설비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및 전기·열·기타 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하체·중량물 취급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 추락·붕괴·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등의 장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3	제39조[보건조치]	•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 배출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계측감시, 정밀공작, 단순반복작업 등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등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4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구조변경을 하려는 경우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사중지명령위반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5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공정안전보고서의 적합통보 전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가동 불가	적합 통보전 가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제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6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7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발생시 은폐해서는 아니되며 그 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 하여야 함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	은폐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 및 거짓보고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8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보호구 착용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대한 직접지시 제외)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9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 하고는 안도, 대어,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안도·대어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됨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 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	제84조[안전인증]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금지 등]	• 유해·위험기계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된 대상기계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등) •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은 사용해서는 아니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1	제93조[안전검사]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안전검사 실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2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 게시 및 해당 근로자 교육하여야 함	미게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개소 당) 교육 미실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대상자 1명당)
23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용기 등의 경고표시]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유해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4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α-나프탈렌아민 및 그 염, 디아니신 및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콜타르피치, 휘발유, 크롬광 가공, 크롬산 아연, O-나톨리딘, 황화니켈류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5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시행규칙 (별표 21)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대상 실시(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 실시) - 유기화합물 등 화학적 유해인자, 소음(80dB 이상) 및 고열의 물리적 유해인자, 분진의 유해인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6	제129조[일반건강진단]	• 상시 근로자 대상 : 사무직(2년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1년 1회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7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시행규칙 (별표 22)의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 근로자 대상 실시 - 유기화합물 등 화학적 인자, 분진, 소음과 진동 및 방사선 등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 •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 배치시 또는 작업전환 시 작업 전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8	제164조[서류의 보존 등]	•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보존기한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함 - 3년 보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기록,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회 회의록(2년),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결과(5년/30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각 서류당)